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건물인도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 [redacted]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3,558,38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[redacted]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비
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